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시스템·행정정보 취급·이용 현황의 주기적 확인
→ 위법행위 의심시 소명 요구 등〉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3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개 요

1.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
3. 회부연월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지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현행법은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의 취급 실태와 처리 기록을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정보의 이용자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78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명(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이하 “소명등”이라 함)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정보 취급·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관련 조문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3.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 4.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5.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6.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동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이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행정정보의 내용을 저장하는 행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	제35조의2(행정정보 취급·이용의 확인)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정보의 취급·이용자가 제35조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취급·이용 행위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거나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 확인 주기, 자료 제출 절차·방법

현행	개정안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1. 제42조제1항¹⁾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2항 및 제3항²⁾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장의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3. 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취급·이용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정정보 취급·이용 행위부터 적용한다.	

1) 「전자정부법」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

행정정보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을 말함.³⁾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호·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②·③ (생략)

2) 「전자정부법」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① 정보주체는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이용기관
2. 공동이용의 목적
3.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종류
4. 공동이용한 시기
5. 해당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주체는 이용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본인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명칭, 공동이용 횟수 등의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4. 5. (생략)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7.~15. (생략)

행정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생활 편의 등을 위해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⁴⁾⁵⁾하나, 법령에 따른 비밀·비공개, 국가 안보, 재판·수사,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⁶⁾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측면도 있음.

-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5) 「전자정부법」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위생 또는 산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실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④ (생략)

이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4조⁷⁾는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취급·이용시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 권한 등을 관리·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⁸⁾ 및 제76조⁹⁾는 행정정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¹⁰⁾을 위한 시스템의 위조·변경·훼손, 비공개 대상인 행정정보의 누설, 무권한 또는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정보의 처리 등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7) 「전자정부법」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8)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3.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
 4.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5.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6.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동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이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행정정보의 내용을 저장하는 행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
- 9) 「전자정부법」 제76조(벌칙) ①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한 자
 2. 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5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6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7호를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한 자
 5. 제7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④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⑥ (생략)
- 10)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⑥ (생략)

또한, 「전자정부법」 제34조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에서는 정보시스템의 권한관리책임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 관리의 적절성 및 접근권한의 오·남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¹¹⁾

개정안은 현행 국무총리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주기적 점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점검사항을 「전자정부법」 제35조 각 호¹²⁾의 금지

11)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접근권한 관리의 책임자 지정·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부여에 관한 책임자(이하 "권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따른 이용자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업무의 총괄
2. 이용자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와 관련된 기능의 구현
3. 이용자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부여의 기준 및 절차 수립
4. 이용자 접근권한 부여 여부의 심사
5. 이용자 등록·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6.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이용 내역에 대한 기록의 사후 점검 및 확인
7.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이용 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 및 주기적 백업 등 관리

③ (생략)

제18조(접근권한 점검·관리) ① 기관의 조직개편·인사발령·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업무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변경해야 할 경우, 권한관리책임자는 그 변경된 인사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에 대해서 접근권한 관리의 적절성 및 접근권한의 오·남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2)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3.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
4.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5.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6.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동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이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행정정보의 내용을 저장하는 행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

행위 여부로 보다 명확히 하고, 추가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소명등을 하도록 하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명등을 거짓으로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등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¹³⁾하도록 하여, 행정 정보 취급·이용에 있어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전자정부법」에서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 권한 등을 관리·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13) 소명등을 거짓으로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등을 거부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례로는 「공직자윤리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⑫ (생략)

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⑭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⑮·⑯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생략)

4. (생략)

③~⑤ (생략)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약사법」 제86조의6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생략)

「화학물질 관리법」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생략)

3의2.·3의3. (생략)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생략)

4의2. 삭제

5.~11. (생략)

②·③ (생략)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규정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을 규정¹⁴⁾하고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자의 행정정보 취급·이용 시 적법성에 대한 감사와 지휘·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¹⁵⁾ 개정안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14)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4. (생략)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8.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7. (생략)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16. (생략)

②·③ (생략)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1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문 의 처

02)6788-5339

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⑤ (생 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 및 수탁기관의 수입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